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사회적약자 참여 보장을 위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역량 있는 주민의 폭넓은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 임기를 축소코자 하며, 기타 직제개편(2015.1.1. 시행)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를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로 개정(안 제9조제5항)
- 나. 위원회 간사 "예산업무의 담당 부서장"을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부서 장"으로 변경(안 제9조제6항)
- 다.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안 제10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3) 입법예고결과

가) 기 간: 2014. 12. 31. ~ 2015. 1. 20.

나)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자 : 성북구 인권위원회

라) 제출의견 조치사항: 수정반영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ㅇ제9조(위원회 구성)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제9조 5항 "성북 구는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와 관련하여 성북구는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일정 수의 위원들을 할 당하여 특정 사회적 약자군에서 위촉 되도록 재권고한다.

ㅇ 수정반영

- 사회적 약자의 범위에 대해서 <u>사</u> <u>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u> 계층이 매우 광범위하여 일정 비율 을 할당하는 것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반할 수 있기에, 위원회 구성시 사 회적 약자가 참여하도록 <u>종전의 임</u> 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할 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5)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6)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약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예산업무의 담당"을 "주민참여 예산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된 위원의 잔여임기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 구성) ① ~ ④ (생	제9조(위원회 구성) ① ~ ④ (현
략)	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위원회 구성 시 다	⑤
양한 사회적 <u>약자가 참여할 수</u>	약자의 참여를 보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u> 장하여야</u>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⑥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	
는 예산업무의 담당 부서장이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임기는 <u>2년</u> 으로 하되, 1회에 한	<u>1년</u>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	<u>,</u>
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첨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역량있는 주민의 폭넓은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위원임기 축소와 사회 적약자 의견 수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발생 요 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위원임기 축소 및 사회적약자 의견 수렴근거 마련의 조례개정으로 비용수계서 작성을 생략 함

4. 작성자

마을담당관 한재헌